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8144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8145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8146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8147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8148호(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대통령령제28149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28150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2815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2
○대통령령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3
○대통령령제28153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28154호(중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2815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1
○대통령령제28156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8157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5
○대통령령제28158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2815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8
○대통령령제2816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9
○대통령령제2816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1
○대통령령제28162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3
○대통령령제28163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7
○대통령령제28164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60
○대통령령제28165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71
○대통령령제28166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88
○대통령령제28167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0
○대통령령제28168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96

(이면 계속)

○대통령령제2816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9
○대통령령제28170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01
○대통령령제28171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06
○대통령령제28127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107
○대통령령제28128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107
○대통령령제28129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107

【부 령】

○외교부령제48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8
○해양수산부령제238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2
○해양수산부령제239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2
○해양수산부령제240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4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05호(국적상실중정정)	116
○법무부고시제2017-113호(귀화허가중정정)	11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24호(2017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116
○환경부고시제2017-121호(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	1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0호(지형도면)	1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4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태안 평천3지구>)	1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5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충남권 태안평천3>)	1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6호(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24
○문화재청고시제2017-79호(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9호(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128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국적취득)	129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국적상실)	129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7-29호(국적상실)	1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2호(구미권광역상수도< I 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승인)	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5호(하천점용 허가)	16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사설항로표지 신설)	16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항로표지 신설)	17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3호(항로표지 신설)	17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항로표지 폐지)	17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17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5호(하천수 사용허가)	17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6호(실시계획 인가)	17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하천수 사용허가)	17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8호(실시계획 인가)	17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하천수 사용허가)	173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2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74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무선국 변경허가)	18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90호(한국산업표준 폐지)	18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9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8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97호(한국산업표준 폐지)	1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98호(한국산업표준 제정)	187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0호(세무사 징계의결)	188
○국방부공고제2017-141호(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41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75호(신기술 지정 신청)	1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3호(고속국도 사용개시)	1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4호(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19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5호(차량 운행 제한)	19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6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94
○해양수산부제2017-682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95
○문화재청공고제2017-225호(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예고)	1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71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9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2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9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7호(행정처분 통지)	199
○충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7-23호(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0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73호(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00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3호(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203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7-18호(해양환경관리업 등록)	20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6호(공시송달)	20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3호(공시송달)	208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86호(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	208
--	-----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제1563호(결정)	210
○헌법재판소공시제1564호(결정)	218
○헌법재판소공시제1565호(결정)	221
○헌법재판소공시제1566호(결정)	224
○헌법재판소공시제1567호(결정)	226
○헌법재판소공시제1568호(결정)	229
○헌법재판소공시제1569호(결정)	232
○헌법재판소공시제1570호(결정)	238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고시제2017-221호(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4차>중정정) 240
-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359호(측정대행업 신규등록) 255
- 강원도공고제2017-638호(수질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255

【상 훈】

- 서훈(보건복지부·특허청) 255

【기 타】

-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57
-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259
-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259

5. 시설물의 명칭 : 낙동영업소, 도개영업소, 서군위영업소(Hi-Pass전용), 군위영업소, 동군위영업소, 화산영업소, 신녕영업소, 동영천영업소, 영천영업소, 북안영업소(Hi-Pass전용)
6. 통행료 수납구간 : 낙동분기점 ~ 영천분기점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7.6.28. ~ 2017.6.27.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5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301호 상주영천선 (상주~영천고속도로)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 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 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4차로~6차로, 93.958Km신설)
기간	2017년 6월 28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플래시기술(주)(이홍원,이희원)

나. 전화번호 : ① 02-480-380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5호

3. 명칭 :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환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써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써 노후관로를 전면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원형 관로 : 환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ø 800mm 이상)

-Box형관로 :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5. 보호기간 : 2012.11.07 ~ 2017.11.0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제2017-68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2. 대 표 자 : 강용덕 (기존: 한상배)

3.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4, 1312호